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
제209회 임시회(2017.01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복지도시위원회
전문위원 김용범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안건명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2017년 01월 12일(木), 유희열 의원 외 13명

3. 위원회 회부일자

- 2017년 01월 12일(木)

4. 관련 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 22조

5.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도시경관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.

6. 주요 내용

조례는 총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

가.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제시하고,

나.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건립주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시 신청방법과 비용부담에 관하여 규정하였음.

다.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공공조형물 건립대상 선정기준과 제작기준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.

라.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공공조형물 건립 부지면적과 위원회의 설치 기능에 관하여 명시하였음.

마. 안 제10조에서는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,

바. 안 제12조 내지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건립 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하여 규정하고,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7. 검토결과,

○ 본 조례안은 2017년 1월 12일 유호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,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, 입법예고(2017.01.13 ~ 2017.01.17) 결과 의견은 없으며, 관련부서 협의도 진행한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음. 조례안은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공공조형물 건립을 추진하면서도 관리규정 부재,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낭비, 관리부실에 따른 흉물 전략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공공조형물의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기본으로 제정된 것임.

마포구의 공공조형물 건립현황은 합정로의 정몽주 선생 동상 등 총6개가 건립되어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<참고자료 1> 과 같음.

또한, 공공조형물은 대부분 외부에 건립되어 있고 인공구조물로서 자연재해에 취약하여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조형물의 관리상태에 대한 점검과 적절한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【참고자료 1】 마포구 공공조형물 건립현황

연번	명 칭	위 치	건립주체 및 관리기관	건립일자
1	정몽주 선생 동상	마포구합정동 (양화대로 녹지대)	공원녹지과	1971
2	이지함 선생 동상	마포구 토정로 (토정로 보도)	지역경제과	2015
3	영 원	마포구 노고산동 신촌노타리 (교통섬 녹지)	공원녹지과	1988
4	황포돛배	마포구 창전동 (서강나루공원)	공원녹지과	2009
5	이지함 스토리텔링	마포구 토정로 (토정로 보도)	지역경제과	2015
6	용 상징물	마포구 토정로 (토정로 보도)	지역경제과	2015